

의안 포함	제2760호~제2761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6. 9. 14.(월) 10:00
제3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○ 안건 : 2건(일부개정1, 제정1)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목 차

□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
□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	5

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60호
- 제출일자 : 2026. 8. 21.
-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봉맹구 의원 외1명)
- 회부일자 : 2026. 8. 26.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, 윤리심사 절차와 징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 보완(안 제1조 및 제2조)
- 수의계약 및 겸직 관련 윤리실천규범 강화(안 제3조)
 - 수의계약 제한, 사적이해관계 사전심의, 겸직 제한 및 겸직 현황 공개에 관한 기준을 신설
- 윤리심사 절차 정비(안 제4조)
 -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를 정비
- 의원 징계기준 및 양정기준 정비(안 제9조)
 - 징계기준을 별도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겸직 관련 위반행위의 징계기준을 강화

4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,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특히, 기존 조례에 규정된 개별 비위행위별 징계기준을 삭제하고,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「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기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겹직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61호
- 제출일자 : 2026. 8. 21.
-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봉맹구 의원 외1명)
- 회부일자 : 2026. 8. 26.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」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, 기존 개별 비위행위 중심의 징계기준을 위반 행위의 유형·정도 및 고의·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개편하고, 징계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징계사유 확대(안 제2조)
 - 겸직 의무 위반, 음주운전, 성폭력 범죄 등 20개 항목으로 확대
- 징계 양정 기준 세분화(안 제3조)
 - 위반행위의 유형·정도, 고의·과실의 경중, 사회적 영향, 평소 행실 및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도록 세부기준 마련
- 징계의결 기한 신설(안 제4조)
 - 징계가 요구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여부를 의결하도록 기한 명확화
- 징계결과 공개 신설(안 제5조)

- 징계처분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- 이번 규칙 제정은 기존 개별 비위행위별 징계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·정도와 고의·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징계 양정 기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명 적용범위를 확대하고, 음주 운전 기준 세분화 및 새로운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762호, 제2764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

2026. 9. 4.(금) 11:00
제3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관복위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: 2건(제정1, 변경계획1)



관광복지위원회

목 차

-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조례안 ... 3
-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(안) ...5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62호
- 제출일자 : 2026. 8. 25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8. 26.

2. 제안이유

-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·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,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소녀상 보호·관리, 훼손방지 조치(안 제5조~제6조)

4. 관련법령

- 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·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, 체계적인 보호·관리와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소녀상 등의 정기점검 및 유지·보수, 훼손·오용 방지와 함께 기림의 날 행사 및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근거법령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2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64호
- 제출일자 : 2026. 8. 25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6. 8. 26.

2. 제안이유

-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(안)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

3. 법적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4.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

(단위: 천원)

부서명	출연기관	2026 출연금		변경이유	관련법령
		당초	변경		
관 광 과	(재)장성군 관광문화재단	200,000	360,000	2026년 재단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· 운영비·사업비 등 운영재원 필요	「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출범 예정인 (재)장성군관광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출연금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- 당초 출연금 2억 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, 이번 변경계획안은 추가 출연금 1억 6천만 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.
- 다만, 현재 관광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정 등 설립절차가 진행 중으로, 조직·정원·보수체계 등 재단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출연금의 산출 근거와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- 특히 상임이사와 관련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, 재단의 주요 인적 구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기 편성된 출연금 2억 원은 유지하되, 상임이사 선정 등 재단의 조직·운영체계를 갖춘 후 구체적인 조직 및 사업계획을 토대로 추가 출연금의 필요성과 규모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이는 관광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,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출연금 1억 6천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그 사유가 있음.
- 이상과 같이 추가 출연금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단의 조직 및 운영체계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확정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766호
----------	--------

2026. 9. 4.(금) 14:00
제3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농위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: 1건(개정1)



건설농정위원회

목 차

□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	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1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66호
- 제출일자 : 2026. 8. 25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인구경제실)
- 회부일자 : 2026. 8. 26.

2. 제안이유

- 제2조(정의)에 인용된 상위법의 변경사항 반영
-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중 거주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혼선 방지

3. 주요내용

- 인구감소지역 정의 변경(안 제2조제1호)
 - (현행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
 - (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
-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명확화(별표)
 - (현행) 전라남도 내 1년(우리군 6개월 포함)이상 계속해서 거주
 - (개정) 장성군 내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12호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의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,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례와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부칙 제1조에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하고,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개정된 지원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부칙 제3조의 표제를 “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특례”에서 “경과조치”로 변경하고,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제3호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,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